

2018. 12. 24.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제 목 : 11월 선고 즉시보도사건 외 보도자료

우리 재판소에서 2018. 11. 29. (목)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8. 11. 29. (목) 14:00 ~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4건. 끝.

보 도 자 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2017헌바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6·25전
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을 전투기간 중 ‘전사’ 한 전몰군경의
자녀로 설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중 ‘전투기간 중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 에 관한 부분이 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6·25전쟁 당시 전남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1950. 9. 1. 전투 중 포탄 파편이 눈을 관통한 후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퇴직하였다가 1966. 1. 2. 위 부상의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청구인은 2016. 8. 4. 서울남부보훈지청장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망인의 사망일자가 1966. 1. 2.인 이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16조의3 제1항이 정한 기간(1953. 7. 27.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이하 양자를 합하여 ‘이 사건 전투기간’이라고 한다)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2017. 6. 19.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의 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국가유공자법(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

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별표]

구분	번호	지역명	기간
(생략)			
경 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결정주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헌법 위반 여부(소극)

가. 차별 취급의 존재

-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인 6·25전몰군경자녀의 범위를 ‘6·25 전쟁에 참전하여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이하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이라 한다)의 자녀로 설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전몰군경자녀 사이에서도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게 되지만 ‘6·25전쟁에 참전하여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뒤 1953. 7. 27.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군경’(이하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이라 한다)의 자녀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차별취급은 존재하고, 위 차별취급이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문제된다.

나. 평등의 원칙 등 위반 여부

-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들 중에서도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경우에는 전투 중 즉시 군경의 생명이 희생되어 가족을 재회하거나 전상군경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기회를 전혀 누리지 못하였고, 자녀의 입장에서 사망한 부모로부터 양육과 보호를 받을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희생의 정도 및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에게는 과거의 미흡한 보상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의 필요성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을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의 자녀와 사이에 차별적 취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추가 보상이라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서 그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보 도 자 료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라고 정의한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관련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관련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의 범죄사실

- 청구인은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2010. 8. 3. 청산)의 대표이사이다.
- 청구인은 시청자가 위성방송 서비스업체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도 암호화된 제어단어를 해독하여 무료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위성방송수신기와 그에 적용되는 펌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복제권·배포권·공표권·공연권 등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제조·가공하였다는 내용의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이후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주장 요지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제136조 제2항 제5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 권리'라 한다)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제조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위 조항들이 규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에 저작권 등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다만 암호화된 위성방송을 복호화(復號化)해서 이에 접근하는 행위를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제124조 제2항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8.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②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결정주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제124조 제2항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한다. 저작권은 공

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의미하고(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는 저작권법 제2장 내지 제4장에 규정된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을 의미한다. 권리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의 주체를 의미한다.

-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의 의미를 살펴본다. 저작권자 등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하였고,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구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내지 무력화 예비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결국은 저작권 등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법연혁, 입법취지 및 저작권 등 권리에 그 권리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것과 관련 없이 단순히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포함되지 않지만,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 자체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해야 하므로, 적어도 너무 쉽게 또는 우연하게 우회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역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보 도 자 료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2017헌바465 구 도로교통법쪽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며,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법원에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17. 11. 14. 청구인에게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과54263).
- 청구인은 위 과태료 재판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7.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금지조항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및 제재조항인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 제1항·제3항,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23조, 제25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 제4항 또는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 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 제3항, 제29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결정주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중 단서 부분은 통행의 제한이 아닌 통행 제한의 완화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전용차로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체계, 도로 현황, 교통수요 및 인프라와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도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전용차로의 설치·운영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 법문에 예외사유의 예시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가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에 대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용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하여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정하고 있는 전용차로 제도에 관한 법률조항 대하여 판단을 한 최초의 사례로, 헌법재판소는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며,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보 도 자 료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2017헌바517등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2016. 1. 1.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 중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의 지위

- 청구인들은 2016. 1. 1.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를 양도한 사람들이다.

● 청구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 청구인 이○○, 장□□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이 개정되자 위 청구인들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제1, 2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 전△△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은 위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인에게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 이에 청구인들은 각각 제1, 2,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관련조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생략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결정주문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소극)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특별히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제가 허용되는 시적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 비사업용 토지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는 토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세율을 가중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소득세법은 2007. 1. 1. 이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가중하여 규정하면서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배제하여 왔다. 입법자는 2009년 이후 시행유예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중과세 제도를 2016. 1. 1.부터 다시 시행하도록 하면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 비사업용 토지를 포함시켰다. 다만, 2016. 1. 1. 이전의 보유기간에 관하여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시적 범위를 2016. 1. 1. 이후 보유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 대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2016. 1. 1. 이후 최소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 그 시행 이전에 배제되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양도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소극)

- 청구인 이○○, 장□□은 정부가 2015년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시적 범위를 한정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인들이 위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 없다.
- 청구인 전△△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2007.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되어 왔으므로, 위 청구인이 구 법질서에 의거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